



서울신용보증재단

수신자 내부결재
(경유)

제목 「개성공단 입주 피해기업 지원 특례보증(중기청)」 취급기준 등 제정(안)

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따라 서울소재 입주기업 및 영업기업에 대한 신속한 자금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「개성공단 입주 피해기업 지원 특례보증(중기청) 취급기준」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.

- 다 음 -

1. 제정근거

- 가. 중소기업청의 「개성공단 입주 피해기업 지원 특례보증 시행지침 알림」 (기업금융과-209, 2016.3.8.)
- 나.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「개성공단 입주 피해기업 지원 특례보증 등 취급기준 시행 알림」 (보증 2016-5843, 2016.3.9)

2. 주요내용 : 세부내용 <붙임> 참조

가. 대상기업

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영업기업 중 본점이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

나. 상환방법 및 지원자금

구 분	1년 만기 일시상환	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
지원자금	은행일반자금	가. 은행일반자금 나.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※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만 지원 가능

주> 은행일반자금 금리 : (1년 만기) 연 2.7%, (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) 연 2.9%

다. 보증한도 : 본건 보증 3억원이내

(본건, 재단 및 他보증기관의 기보증금액 포함 8억원 이내)

라. 보증비율 : 100% 전액보증

마. 보증료율 : 연 0.5% (장기보증료 선납할인 적용불가)

3. 보증업무처리방법

가. 보증처리절차

구 분	가. 소액심사보증 취급시 나. 기보증회수보증 취급시	일반심사보증 취급시
상담/접수	지점 보증지원팀	지점 보증지원팀
조사/실사		보증지원부 심사팀
품의/승인		
약정/실행		
사후관리		지점 보증지원팀

주> 서류접수 후 심사팀으로 송부(전자팩스 송부 후 실물서류 이관)

나. 신규 및 증액보증에 한함. 단, 본 취급기준에 의해 취급한 보증을 회수하는 조건의 보증(회생지원보증 포함) 취급 가능

다. 타보증 상품과의 연계 불가

라. 접수 후 우선 처리할 것

4. 기타사항

가. 각 지점에서는 전담상담자(본부장, 지점장)가 상담전용창구를 활용하여 대상기업을 직접 상담할 것

나. ‘기한연장 및 보증 사고처리 유보방침(<붙임2> 참조)’에 의거,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영업기업 보증 사후업무 처리할 것

5. 시행일 : 2016.03. .(접수일 기준)

- 붙임 : 1. 개성공단 입주 피해기업 지원 특례보증(중기청) 취급기준 1부.
 2. 기한연장 및 보증 사고처리 유보방침 1부.
 3.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영업기업 명단 1부.
 4. ‘개성공단 입주기업 특별보증’ 및 ‘개성공단 입주 피해기업 지원 특례보증(중기청)’ 비교표 1부. 끝.

★과장

팀장

부장

이사장

협조자 전산지원부장

회생지원부장

전략기획실장

시행 보증지원부-145 (2016.03.14.) 접수 ()

우 121-705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68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16층 / <http://www.seoulshinbo.co.kr>

전화 02-2174-5214 /전송 02-3278-8117 / sptunik@seoulshinbo.co.kr / 공개